

◎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0-278호

「농지법」 제38조제5항과 제6항에 따른 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 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5월 29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농지전용 인허가 이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및 감면 관련 세부기준

□ 신청대상

-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이 존재하는 사실이나 자신이 부담금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담금을 납부한 자

□ 신청자격

- ① 감면 자격을 인허가일 전부터 충족하고 있어야 하고,
- ② 감면요청(환급결정) 시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서,
농지전용 목적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간 자격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하며,
- ③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하는 납부자

* 3개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음

<사례별 환급 가능여부 분석표>

구 분	인허가 전 자격 충족여부	감면요청(환급결정) 시 자격 유지여부	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 여부	가능 여부
사례 1	○	○	○	○
2	○	○	X	X
3	○	X	○	X
4	○	X	X	X
5	X	○	○	X
6	X	○	X	X
7	X	X	○	X
8	X	X	X	X

- ▶ 목적사업 완료 전이라도 ①인허가 전에 자격충족을 못했거나, ②자격유지가 안된 경우, ③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불가
- ▶ 반대로 목적사업 완료 후라도 ①인허가 전에 자격을 충족했고, ②자격이 유지되었으며, ③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

□ 신청기간

- 농지보전부담금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
- ※ 가급적 일제정비 기간인 '20.6월부터 8월 중으로 신청 권고

□ 제출서류

-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
- 신분증, 농지전용허가(신고)증,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영수증, 자격충족과 유지 관련 증명서, 토지 등기사항증명서, 통장사본
- * 농지전용허가(신고)증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는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 가능(동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)
- ※ 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는 인허가부서에서 환급 결정 안내를 받은 후 별도로 제출

□ 환급(감면) 금액

- 이미 납부한 금액에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과 환급가산금

□ 신청장소(부서) 및 문의처

- 농지전용 인허가를 통보받은 인허가부서
- * 농지 소재 시·군·구 농지관련 부서(농업정책과, 친환경농업과, 농축산과 등)

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신청서

신 청 인	성명(명칭)	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		
	주소 (전화번호:)					
신청금액			농지보전부담금 납부내역		납 부 일 : 납부금액 :	
환급 신청 내용	환급사유	대상지	인허가일	자격 충족시기	자격 유지여부	5년 이내 여부
	인허가 이후 감면요청	00면 00리 000번지	'15.3.1.	'15.2.1	0	0(행정청 답변 오류('19.5월)로 소멸시효 중단 적용)
송금계좌	예 금 주		거 래 은 행		계 좌 번 호	

「농지법」 제38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정히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 관
시 · 도 지 사
시장 · 군수 · 자치구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1. 신분증 사본 1부.(본인의 경우) * 본인이 아닌 경우 : 위임장(인감도장 날인), 인감증명서 1부. 2.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영수증(납부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 등) 1부. 3. 자격 충족과 유지 관련 증명서류 1부. * 행정청의 답변 오류 등으로 소멸시효(5년)가 경과된 경우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4. 통장사본 1부.	수수료 없 음
담당 직원 확인사항	농지전용허가(신고) 사항, 토지 등기사항증명서(소유권 변동사항 확인용) 주민등록표 등본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신청인(대표자)	(서명 또는 인)

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청구서

청 구 인	성명(명칭)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
	주소 (전화번호:)		
청구금액			
결 정 통 지 서	제 호 (년 월 일)		
	통지기관명:		
송금계좌	예 금 주	거 래 은 행	계 좌 번 호

「농지법」 제38조제5항,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 금액을 농지보전부담금의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 구 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

첨부서류	농지보전부담금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정통지서	수수료 없 음
담당 직원 확인사항	주민등록표 등본(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
신청인(대표자)	(서명 또는 인)